

KCOPA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온라인보호부

2022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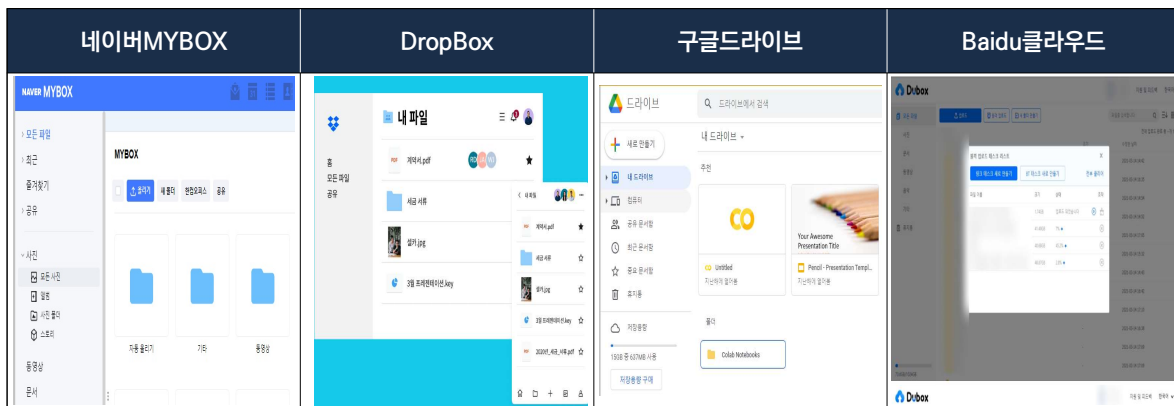
저작권 침해 이슈리포트

클라우드 서비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I.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콘텐츠 유통환경은 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공유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한정된 PC 자원만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여러 PC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PC처럼 사용하는 가상화 기술이 점차 주목받아 발전하였다. 가상화 기술의 한 영역으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를 내려받기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없이 콘텐츠를 특정 서버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접속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어 그 효율성이 매우 높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¹⁾을 말한다. 과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포털이나 웹하드, 웹호스팅 서비스를 통해 이용되었으나 기술의 한계와 네트워크로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정보량의 한계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유 가능한 데이터 수준과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시장가치는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나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항상 권리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유형은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서 지원하는 공유기능을 통해서 개인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콘텐츠를 올린 후 다른 사람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URL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 [그림] 클라우드 컴퓨팅 공유 서비스 플랫폼



II. 조사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외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서버(이하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린 후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URL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식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포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URL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다. 본조사는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4주간 진행하였으며, 보호원 재택모니터링단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저장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되는 URL 링크 게시물에 대하여 URL 링크제공 사이트 명, 클라우드 서비스명, 침해 저작물명, 침해 저작물 장르, 침해 저작물의 권리국가 등을 조사하였다.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0825&mobile&categoryId=20000072>

●●● [표] 조사개요

- (조사기간) '22. 5. 3.(월) ~ 5. 30.(월), 4주간
- (조사대상)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되는 URL 링크제공 게시물
- (방법) 클라우드 서비스 URL 링크제공 게시물 검색을 통한 불법복제물 주요 정보 수집

수집항목		
URL 링크제공 사이트명	클라우드 서비스명	침해 저작물명
침해 저작물 장르	침해 저작물 권리사	침해 저작물 권리국가

-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유형 분석

분석내용		
URL 링크제공 사이트 유형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불법복제물 유통량
불법복제물 장르 유형	국내외 침해 비율	장르별 침해 순위

III. 분석결과

1.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되는 URL 링크제공 게시물에 대하여 총 4주간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6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통해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총 16개 업체 중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는 총 3개(18.8%),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는 총 13개(81.2%)로 나타났다.

●●● [표] 불법복제물 유통이 확인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구분	국가명	클라우드 서비스명	사이트 URL
국내(3)	한국	네이버MYBOX	https://mybox.naver.com/
		Send anywhere	https://send-anywhere.com/
		sendycloud(일본지사)	https://home.sendycloud.com/
국외(13)	미국	Dropbox	https://dropbox.sckcloud.co.kr/
	미국	구글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
	뉴질랜드	MEGA	https://mega.io/
	일본	TeraBox	https://www.terabox.com/
	독일	workupload	https://workupload.com/
	중국	바이두클라우드	https://pan.baidu.com/
	미국	mediafire	https://www.mediafire.com/
	프랑스	1Fichier	https://1fichier.com/
	러시아	MegaUp	https://megaup.net/
	네덜란드	wetransfer	https://wetransfer.com/
	미국	원드라이브	https://onedrive.live.com/about/en-us/
	미국	구글독스	https://docs.google.com
	미국	4shared	https://www.4s.io/

2. 클라우드 서비스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확인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대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조사한 결과, 총 12,466건의 불법복제물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유통된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통량은 총 308건(2.5%)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량은 총 12,158건(97.5%)으로 나타나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95%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불법복제물 유통량

구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량(건)	308	12,158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유통된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 ‘sendycloud’가 총 110건(0.9%)으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유통량을 나타냈으며, ‘Send anywhere’ 총 105건(0.8%), ‘네이버MYBOX’ 총 93건(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글드라이브’가 총 9,469건(76.0%)으로 가장 많은 유통량을 나타냈으며, ‘MEGA’ 총 826건(6.6%), ‘TeraBox’ 총 826건(6.6%), ‘workupload’ 총 510건(4.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명	유통량(건)	비중
국내	네이버MYBOX	93	0.7%
	sendycloud	110	0.9%
	Send anywhere	105	0.8%
국외	Dropbox	69	0.6%
	구글드라이브	9,469	76.0%
	MEGA	826	6.6%
	TeraBox	688	5.5%
	workupload	510	4.1%
	Baidu클라우드	200	1.6%
	mediafire	164	1.3%
	1Fichier	64	0.5%
	MegaUp	63	0.5%
	wetransfer	58	0.5%
	원드라이브	32	0.3%
	구글독스	14	0.1%
	4shared	1	0.0%
합계		12,466	100.0%

3. 불법복제물 URL 링크 게시물 제공 사이트 현황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되는 URL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62개의 사이트가 확인되었다. 사이트 유형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블로그, 카페’ 총 6,708건(53.8%), ‘커뮤니티’ 총 2,296건(18.4%), ‘포털’ 총 1,591건(12.7%), ‘소셜미디어’ 총 1,203건(8.2%), ‘토렌트 사이트’ 총 721건(5.7%) ‘기타’ 총 127건(0.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URL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유형별 유통량 및 비중

구분	포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SNS	토렌트	기타
유통량	1,591	2,296	6,708	1,023	721	127
비중	12.7%	18.4%	53.8%	8.2%	5.7%	1.0%
합계	12,466(100%)					

4. 클라우드 서비스별 불법복제물 장르 침해 현황

전체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2,466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별 불법복제물 장르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송’ 5,878건(47.2%), ‘음악’ 3,765건(30.2%), ‘게임’ 1,884건(15.1%), ‘영화’ 555건(4.5%), ‘기타’ 258건(2.1%), ‘만화’ 53건(0.4%), ‘SW’ 42건(0.3%), ‘출판’ 3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8개 장르 중 방송, 영화가 전체의 77.4%를 차지하여 영상 저작물의 유통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URL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유형별 유통량 및 비중

클라우드 서비스명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	기타
국내	네이버MYBOX	-	-	-	-	93	-	-	-
	sendycloud	-	-	110	-	-	-	-	-
	Send anywhere	-	-	100	-	-	-	-	5
국외	Dropbox	59	-	1	-	6	-	3	-
	구글드라이브	2,393	508	4,772	19	1,454	50	36	237
	MEGA	104	28	655	7	25	1	3	3
	TeraBox	614	5	57	-	1	1	-	10
	workupload	508	-	2	-	-	-	-	-
	바이두클라우드	36	14	133	5	8	1	-	3
	mediafire	-	-	-	-	164	-	-	-
	1Fichier	-	-	-	-	64	-	-	-
	MegaUp	-	-	-	-	63	-	-	-
	wetransfer	45	-	13	-	-	-	-	-
	원드라이브	2	-	25	-	5	-	-	-
	구글독스	4	-	10	-	-	-	-	-
	4shared	-	-	-	-	1	-	-	-
합계	3,765	555	5,878	31	1,884	53	42	258	
비중	30.2%	4.5%	47.2%	0.2%	15.1%	0.4%	0.3%	2.1%	

5. 불법복제물 상위 4개 장르 콘텐츠 침해 순위

●●● [표] 불법복제물 상위 4개 장르 콘텐츠 침해 순위

방송				영화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
1	귀멸의 칼날	일본 후지TV	293	1	너의 이름은	코믹스 웨이브필름	10
2	틴 타이탄 GO! 시즌3~시즌7	미국 Cartoon Network	225	2	이웃집 토토로	도호	9
3	SBS 인기가요	SBS	119	3	날씨의 아이	코믹스 웨이브필름	8
4	포켓몬스터W	일본 TV도쿄	114	4	The sound fo music	20세기 폭스	7
5	괴도카드1412	일본 YTV	90	5	천공의 성 라퓨타	스튜디오 지브리	7
6	뮤직뱅크	KBS2	75	6	고양이의 보은	스튜디오 지브리	5
7	아는 와이프	tvN	59	7	하울의 움직이는 성	스튜디오 지브리	5
8	Re: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일본 AT-X	58	8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애니플렉스	5
9	엠카운트다운	Mnet	49	9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격돌! 낙서왕국과 ~	신에이 동화, 등	4
10	쇼! 음악중심	MBC	48	10	(극장판) 원피스 1기 황금의 대해적 우란	토에이 애니메이션	4

음악				게임			
순위	콘텐츠명	아티스트	유통량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
1	sentimental steps	러브라이브 스쿨	22	1	포켓몬스터 블랙	게임 프리크	61
2	진격의 거인 OST	Linked Horizon	15	2	포켓몬스터 화이트	게임 프리크	52
3	퓨어퓨어 하트	방과 후 티타임	8	3	포켓몬스터 DP	게임 프리크	52
4	밥은 반찬	방과 후 티타임	7	4	포켓몬스터 하트골드	게임 프리크	35
5	U&I	에일리	7	5	젤다의 전설 시리즈	닌텐도 R&D4	30
6	폭신폭신타임	방과 후 티타임	6	6	동물의숲	닌텐도	26
7	귀멸의칼날 : Original Soundtrack	고다(GODA)	6	7	포켓몬스터PT 기라티나	게임 프리크	24
8	Beautiful World	Utada Hikaru	5	8	포켓몬스터 소울실버	게임 프리크	23
9	No differences	Aldnoah Zero	4	9	메탈슬러그	니즈카 코퍼레이션	23
10	Higher Ground	Stevie Wonder	4	10	리듬세상	닌텐도	20

IV. 맺으며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되는 URL 링크를 제공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링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 쉽게 이동하도록 해 주는 기술²⁾, 하나의 웹페이지 내의 여러 문서와 파일들을 상호 연결하거나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웹페이지를 상호 연결해 주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에 손쉽게 접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³⁾으로 법원은 정의하였다. 저작물로의 링크 자체는 저작물의 인터넷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 역시도 서버에 저장된 개개 저작물의 위치 정보에 불과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2021년 9월 9일 대법원은 영화 등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게시된 사이트들의 링크 주소를 모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시⁴⁾하였다. 이 사건은 2015년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의 웹페이지 주소를 450회에 걸쳐 링크해 저작권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1심과 2심 모두 위와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주요 쟁점

- 저작권 침해 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방조

-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범의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하지만 대법원은 10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링크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을 돕는 방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다른 문제이라고 판시하며,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별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하여는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열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검사에게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정범의 행위는 업로드 시점에서 종료되므로, 이후의 링크 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천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보면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지속하여 게시하지 않고 단순히 일상생활에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링크 제공은 아직은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기획·집필 | 온라인보호부 김찬솔 과장
조사·통계 | 서준호 선임, 최성이 주임